

# 거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6 ~ 76
----------	-----------

제출연월일	2006. 12. 7.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1. 개정이유

-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의하는 용어와 조례명을 변경하고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관할 읍·면장에게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 마을상수도 시설의 위탁시 위탁관리업자 지정 및 자격 조건을 명문화하여 위탁관리 업무 능력을 극대화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명을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변경
- 마을상수도시설 관리를 관할 읍·면장에게도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등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안 제4조제1항).
-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탁하게 할 때에는 위탁관리업자를 지정토록 규정(안 제22조제2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수도법」 (개정 2005.12.29, 법률 제7777호)
- 「수도법 시행령」 (개정 2006. 6.29, 대통령령 제19573호)

### 나. 예산조치 : 없음

### 다. 기 타

- (1)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2)입법예고(2006.11.15 ~ 12.6) 결과 : 의견제출 없음

## 거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중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로 한다.

제2조제1호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호 및 제5호중 "간이급수시설"을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로 한다.

3.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당해지역의 군수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지역의 사용자 대표 협의회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사용자 대표 협의회가 구성 되지 않아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마을 이장을 관리자로 본다.

제3조제1항중 "간이급수시설"을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관리자 및 해당 읍·면장은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 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 ②관리자 및 해당 읍·면장은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면장은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간이급수시설”을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읍·면장은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며, 그 내용을 관리자 및 군수에게 통보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해당 읍·면장 및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 및 해당 읍·면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읍·면장과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중 “간이급수시설”을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로 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을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읍·면장이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 및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해당 읍·면장은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 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중 “간이급수시설”을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읍·면장은 현장을 신속히 점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중 “간이급수시설”를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간이상수도시설”을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로 한다.

제12조중 “간이급수시설”을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지역의 급수조례”를 “거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1호 및 제2호, 제21조중 “간이급수시설”은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로 한다.

제20조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관리의 위탁)”을 “(관리위탁 및 대행업체 지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군수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수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 대표자 또는 민간업체(이하 “위탁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탁하게 할 때에는 위탁관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③위탁관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득한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위탁관리를 지정 받은 자로 한다.

- ④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업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위탁관리구역내의 현재 및 장래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위탁할 수 있다.
- ⑤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탁한 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관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 ⑥군수는 위탁관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인력 장비 기타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고, 위탁관리업자는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위탁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6조, 제12조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한다.

별표1을 별표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목, 별지 제2호 서식 제목 및 별지 제3호서식 제목중 “간이급수시설”을 “마을상수도시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거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u> <u>급수시설관리조례</u></p> <p>제1조(목적) 조례는 <u>수도법</u>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간이상수도</u>와 <u>소규모급수시설</u>(이하 “<u>간이급수시설</u>”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간이상수도</u>”라 함은 <u>수도법</u>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li> <li>2. (생략)</li> <li>3. “<u>관리자</u>”라 함은 <u>간이상수도</u>의 경우 당해 지역의 군수를, <u>소규모급수시설</u>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 대표 협의회의 대표자(이하 “<u>대표자</u>”라 한다)</li> <li>4. “<u>사용자</u>”라 함은 <u>간이급수시설</u>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li> <li>5. “<u>사용자대표협의회</u>”(이하 “<u>협의회</u>”라 한다)라 함은 <u>간이급수시설</u>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li> </ol>	<p style="text-align: center;"><u>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u> <u>급수시설 관리조례</u></p> <p>제1조(목적) 조례는 「<u>수도법</u>」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마을상수도</u>와 <u>소규모급수시설</u>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마을상수도</u>”----- -----</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u>관리자</u>”라 함은 <u>마을상수도</u>의 경우 당해 지역의 군수를, <u>소규모급수시설</u>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 대표 협의회의 대표자(이하 “<u>대표자</u>”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사용자 대표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협의회가 불가능할 경우 <u>마을이장을 관리자</u>로 본다.</li> <li>4. -----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li> <li>5. ----- -----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li> </ol>

##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비계획 수립)</p> <p>①군수는 <u>간이급수시설</u>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u>간이급수시설</u>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제4조(시설의 관리)</p> <p>①관리자는 <u>시설물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u>를 관장한다.</p> <p>②관리자는 <u>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u>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한다. 이 경우 <u>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제5조(취수원보호 등)</p> <p>①관리자는 <u>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u>을 보호하기 위하여 <u>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u>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②관리자는 <u>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u>를 설치하거나 <u>자물쇠 장치</u>를 하는 사람이나 <u>가축이 함부로 접근</u>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3조(정비계획 수립)</p> <p>①-----<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 -----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 -----</p> <p>제4조(시설의 관리)</p> <p>①관리자 및 해당 읍·면장은 <u>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 관리 일체</u>를 관장한다.</p> <p>②관리자 및 해당 읍·면장은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u>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읍·면장은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③군수는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u>를 위하여 <u>기술적, 재정적 지원</u>을 할 수 있다.</p> <p>제5조(취수원보호 등)</p> <p>①-----<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 ----- -----</p> <p>②-----<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 ----- ----- -----.</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점검)</p> <p>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p>②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점검)</p> <p>①읍·면장은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며, 그 내용을 관리자 및 군수에게 통보하고 보관하여야 한다.</p> <p>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해당 읍·면장 및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8조(개선조치) 관리자 및 해당 읍·면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읍·면장과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유지보수)</p> <p>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u>간이급수시설</u>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u>소규모급수시설</u>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관리자는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소규모급수시설</u>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제9조(유지보수)</p> <p>① ----- ----- ----- -----<u>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u> ----- -----<u>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u>-----</p> <p>②<u>읍·면장이 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u>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 및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u>해당 읍·면장은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 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p> <p>군수는 태풍,홍수,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및 사고로 인하여 <u>간이급수시설</u>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u>간이급수시설</u>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lt;후단신설&gt;</p>	<p>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p> <p>----- -----<u>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u>----- -----<u>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u>-----</p> <p>이 경우, 읍·면장은 현장을 신속히 점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시설의 폐지)</p> <p>①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u>간이급수시설</u>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군수가 <u>간이상수도시설</u>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p>	<p>제11조(시설의 폐지)</p> <p>①-----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 ----- ----- ----- ----- ----- ----- -----</p> <p>② -----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 ----- -----</p>
<p>제12조(건강진단)</p> <p>군수는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u>간이급수시설</u>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12조(건강진단)</p> <p>----- -----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 ----- -----</p>
<p>제13조(요금징수)</p> <p>①군수는 <u>간이상수도</u> 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u>간이상수도</u>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제13조(요금징수)</p> <p>① -----<u>마을상수도</u>----- ----- <u>마을상수도</u>----- -----</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p>	<p>②----- ----- ----- ----- -----거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p>
<p>제14조(관리비용)</p> <p>①군수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u>간이급수시설</u>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u>간이급수시설</u>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u>간이급수시설</u>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4조(관리비용)</p> <p>① ----- ----- -----<u>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u> -----<u>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u> ----- -----</p> <p>②<u>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u>----- ----- ----- -----</p>
<p>제17조(구성)</p> <p>①협의회는 <u>간이급수시설</u>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p> <p>②협회의 대표자는 <u>간이급수시설</u>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p>	<p>제17조(구성)</p> <p>①-----<u>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u> ----- -----</p> <p>②-----<u>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u> ----- -----</p>
<p>제18조(기능) (생략)</p>	<p>제18조(기능) (현행과 같음)</p>

##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1. <u>간이급수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u></p> <p>2. <u>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부담 등에 관한 사항</u></p> <p>3.~5.(생략) 제20조(실비변상)</p> <p>군수는 <u>간이상수도</u> 협의회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1.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 -----</p> <p>2.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 -----</p> <p>3.~5.(현행과 같음) 제20조(실비변상)</p> <p>----- <u>마을상수도</u>----- ----- ----- ----- -----</p>
<p>제21조(교육) 군수는 <u>간이급수시설</u>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p> <p>제22조(관리의 위탁)</p>	<p>제21조(교육)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 ----- ----- ----- -----</p> <p>제22조(관리위탁 및 대행업체 지정)</p>
<p>①군수는 <u>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u></p>	<p>①군수는 <u>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수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 대표자 또는 민간업체(이하 “위탁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u></p>
<p>②위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u>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탁하게 할 때에는</u></p>

## 신 · 구조문 대비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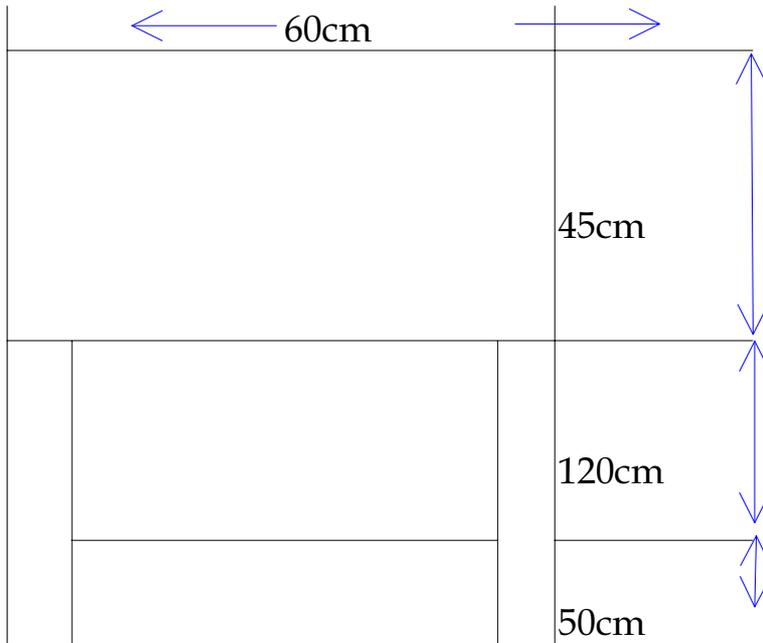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p>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위탁관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③위탁관리업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득한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위탁관리업을 지정 받은 자로 한다.</p>
<p>&lt;신 설&gt;</p>	<p>④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업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위탁관리구역 내의 현재 및 장래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위탁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과 소규모급수시설을 위탁한 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관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p>
<p>&lt;신 설&gt;</p>	<p>⑥군수는 위탁관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인력 장비 기타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고, 위탁관리업자는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위탁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p>

##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1호서식] 간이급수시설 관리대장(제4조제2항관련) 표 (생략)</p>	<p>[별지 제1호서식] 마을상수도시설 관리대장(제4조제2항관련) 표 (현행과 같음)</p>
<p>[별지 제2호서식] 간이급수시설 정기점검 대장(제7조제1항관련) 표 (생략)</p>	<p>[별지 제2호서식] 마을상수도시설 정기점검 대장(제7조제1항관련) 표 (현행과 같음)</p>
<p>[별지 제3호서식] 간이급수시설 수시점검 대장(제7조제1항관련) 표 (생략)</p>	<p>[별지 제3호서식] 마을상수도시설 수시점검 대장(제7조제1항관련) 표 (현행과 같음)</p>

[ 별표 ] 마을상수도시설 안내판 (제5조제1항 관련)

## 마을상수도시설 안내판



- 재질 및 두께 : 5mm 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 바탕색 : 흰색
- 글 씨 : 청색
- 내용문

### 알 림

1. 이곳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상수도(또는 소규모급수 시설)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시 연락처 : 00 담당 ( 전화 : )